

정부회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 방안

심 재 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I. 서 론

1998년에 시작되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회계모델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본격 실시됨으로 정부회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은 새모델의 성공적 도입과 함께 정부재정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회계제도를 이끌고 있는 관련자들의 역량과 의지라고 생각한다. 정부회계제도를 이끌고 있는 관련자들을 정부회계인(government accountants)라고 할 때 정부회계인에는 정부회계정보 생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담당자(공무원), 정부회계정보를 감사하는 정부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정부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이용자(주민, 의회 및 감독기관, 투자자 등)가 등이 있다.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이들 정부회계인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회계담당자는 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있고 목적적합한 정부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보이용자는 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정에 정통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함으로써 정부재정보고의 질이 향상도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태는 정부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 모두 정부회계에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부회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도 정부재정보고의 질에 대한 회의가 있다. 1980년대 중반의 미국일반회계원(USGAO)은 연방보조금을 받는 기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검토한 보고서 중 34%가 수준이하의 감사였고, 주 및 지방감사인보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더 수준이었다는 발표를 한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정부단위감사의 질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5E를 제시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AICPA는 정부감사질센터(the Governmental Audit Quality Cente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미국보다 더 크다. 여러면에서 정부회계환경이 미국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는 새로운 정부회계모델의 정착과 성공에 열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인 모두가 정부회계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감으로써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회계인 중에서도 전문성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것은 정부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측면과 제도 개선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II장에서는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III장에서는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결론을 맺는다.

II.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정부회계담당자는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정부회계관련 공무원은 보통 회계실무공무원, 중간관리층, 최고관리층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정부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2.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회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부회계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계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직으로 전출되는 실정이다. 또한 회계직이 승진 등에 특별한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문교육에 그쳐서는 안되고 매년 일정시간의 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을 시켜야 하나 전출되면 그것으로 교육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상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본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1.1 단기적인 방안

(1) 정부회계담당자의 자격조건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공무원 우선 보임하는 것이다. 그 자격은 사전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회계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일정기간(예, 3년 이상)을 회계직에 있도록 하고 매년 계속교육을 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한국정부회계학회 등에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2. 장기적인 방안

(1)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을 포함시켜 전공무원이 사전에 정부회계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정부회계직을 일반직(순환근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여 회계학을 전공한 자를 채용하여 회계직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3) 정부회계자격증제도(certification program)를 만들어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승진 등에 우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및 지방정부회계담당자들의 모임인 정부재정관리자협회(GFOA)에서는 공인재정관리사(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를, 연방정부회계사들이 모임인 정부회계사협회(AGA)의 공인정부재정관리사(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 CGFM)를 자격증으로 주고 있다.

(4)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연구 및 학습모임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및 지방정부회계담당자들의 모임인 정부재정관리자협회(GFOA), 연방정부회계사들이 모임인 정부회계사협회(AGA)와 같은 조직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5)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연구보고서, 해설서 등 책자의 발행하여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

2.2.1. 정부회계교육의 현황

정부회계관련 공무원의 교육은 보통 회계실무공무원, 중간관리층, 최고관리층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지방회계교육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문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초점은 회계실무공무원에 맞추어져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입문교육을 시리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교재내용과 유사하게 편성되었는데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과 정부예산회계제도의 혁신
- 복식부기회계 도입의 필요성
- 정부회계의 기초개념과 복식부기원리
- 지방회계기준 해설
- 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회계
- 재정분석
- 시범기관의 운영사례
- 자산실사 및 평가분야
- 전산시스템의 이해

교육은 초점은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에 맞추어 졌는데 2005년에 와서는 자산실사 및 평가분야가 추가되었고 2006에 와서는 전산시스템의 이해가 추가되었다.

일반교육은 일종의 소양교육 또는 교양교육으로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소양교육, 권역별 순회교육, 지방자치단체 직장교육, 워크숍, 연찬회, 정부회계학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현재의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입문적 교육을 하여 현행 업무를 수행한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계속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준별(입문과정, 심화과정, 계속교육과정)로 교육과정을 목적적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GFOA의 CPFO, AGA의 CGFM이다. 이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들 자격시험과목은 정부회계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부회계지식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정부회계 교육과정 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다.

2.2.1. 공인재정관리사의 시험과목

공인재정관리사(CPFO)는 정부재정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교육적 자습프로그램(a broad educational self-study program)으로 래드포드대학교의 정부 및 지원센터(Radford University's Governmental and Nonprofit Assistance Center)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CPF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정(public finance)에 관련된 다음의 다섯 가지 과목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1) 정부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ial Reporting)
- (2) 현금관리 및 투자(Cash Management and Investments)
- (3) 부채관리(Debt Management)
- (4) 운영 및 자본예산(Operating and Capital Budgeting)
- (5) 연금 및 급여, 위험관리, 구매(Pensions & Benefits, Risk Management, and Procurement)

정부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는 회계 및 내부통제, 재무보고, 감사의 3부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회계 및 내부통제

1. 내부통제의 목적
2. 내부통제의 포괄적 틀의 요소
3. 내부통제의 책임
4. 내부통제의 태생적 한계
5. 통제관련 정책 및 절차의 평가

B. 재무보고

1. 내부재무보고
2. 특별목적 외부재무보고
3. 일반목적 외부재무보고의 목적
4. 회계자료의 특성
5. 보고실체
6. 일반목적 외부재무보고서의 이용자
7. 정부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원천
8. 기금회계 및 기금재무제표
9. 측정초점과 회계의 기준
10. 기금잔액의 중요성
11. 연금과 기타퇴직급여
12. 정부통합재무보고
13.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
14. 교서의 내용
15. 경영자의 설명 및 분석내용
16. 보급용 재무보고

C. 감사

1. 감사와 감사인의 유형
2. 감사기준과 감사독립성

3. 합리적 확증
4. 중요성
5. 의견단위
6. 중요한 약점
7. 단일감사
8. 독립감사인인 보고서와 발견물
9. 재무감사의 획득
10. 감사인의 순환교체
11. 감사위원회
12. 성과감사
13. 내부감사

2.2.3. 공인정부재정관리사의 시험과목

공인정부재정관리사(CGFM)는 1994년에 시작한 이래로 정부재정관리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탁월성 징표(The Mark of Excellence i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를 삼고 있다.

CGFM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1) 정부환경(Governmental Environment)
- (2) 정부회계, 재무보고, 및 예산(Government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and Budgeting)
- (3) 정부재정관리 및 통제(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정부회계, 재무보고, 및 예산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일반지식 부문(General Knowledge Section):

1. 영향, 목적 및 기준설정
2. 정부재무회계의 일반원칙
 - 회계의 기준
 - 기금회계
 - 특정거래 및 사건의 회계
3. 재무보고
 - 일반
 - 보고실체
 - 재무보고서의 내용
4. 원가회계 및 성과
 - 원가회계
 - 성과보고
5. 예산

- 예산편성방법
- 예산과정

B. 상세지식 부문(Detailed Knowledge Section)

1.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무회계 및 보고
 - 기금재무회계
 - 예산회계
 - 분류
 - 특정거래 및 사건의 회계인식, 측정 및 공시
 - 재무보고
2. 연방회계 및 재무보고
 - 예산 및 실제회계
 - 특정거래의 재무보고
 - 재무보고
 - 특정거래, 사건 및 잔액의 측정, 인식기준과 공시

2.2.4. 시사점

(1) 현행의 우리나라 정부회계담당자 교육은 회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CPF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과목이외에 현금 관리 및 투자, 부채관리, 운영 및 자본예산, 연금 및 급여, 위험관리, 구매를 학습해야 하고, CGFM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회계, 재무보고, 및 예산과목이외에 정부환경, 정부 재정관리 및 통제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2) 계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Ⅲ.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방안

지방재정법 제53조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미국의 GAO의 정부감사기준(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은 정부감사를 재무감사(financial audit), 인증업무(attestation engagements),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 3분류하고 있다. 정부감사는 기업감사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주로 기업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주로 기업감사 위주로 교육을 받고, 기업감사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감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정부감사에 관심을 가질 인센티브가 적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정부감사의 질이 수준이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85년에 미국 GAO는 비연방감사(non-federal audit), 즉, 주 및 지방감사인과 독립공인회계사 및 지방감사인들에 의해 수행된 감사의 질을 조사했는데 주 및 지방감사인들에 의해 수행된 감사의 질이 독립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 감사의 질보다 우월했다. GAO는 독립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 감사 중 대략 22%가 상당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고 감사보고서의 추가된 23%는 주요한 변경을 필요로 했다.

1987년 AICPA는 직업윤리부(professional ethics division)하에 정부단위감사의 질에 대한 소위를 구성하여 정부단위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E(education, enforcement, exchange of information, evaluation, engagement)를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도 크게 나누면 교육과 제도보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부단위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 감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3.1.1. 단기적인 방안

(1) 보수의 설정과 감사수입제도 채택

회계사의 정부회계감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는 감사보수이다. 적정한 감사보수가 설정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감소도리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로 이어 질 수 있다.

감사수입제도로 지정제와 자유수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수입제도를 통해 법인간에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 전문적인 지식 발전 유지를 정부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공인회계사 연수과목으로 정부회계강의 도입하여 이를 이수한 회계사가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의 강화

정부감사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evaluation)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비연방감사를 위해 수행되는 다음의 두가지 검토(review)를 추가하였다:

(1) desk review: 감사보고서에 한정

- 감사보고서 전문적 보고기준과의 일치여부 검사
- 명확화가 필요한 항목 식별
- 프로그래매니저가 해결하여야 할 보고서에서의 어떤 감사 발견물을 식별하고 기록

(2) quality control review

- 감사조서 및 지원서류 검토
- 감사가 적용가능한 전문적 기준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한 감리제도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회계감사품질관리 감리위원회가 맡거나, 별도의 공공회계감리위원회, 정부회계감리위원회가 제안 된 바 있다.

3.1.2. 장기적인 방안

(1)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현재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들은 대부분 정부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어도 CPE교육에서 형식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감사가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에서 정부감사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GAO의 정부감사기준(yellow book)이 있었는데도 1981년에 AICPA 정부회계 및 감사위원회에서 산업감사지침(Industry Audit Guide)으로 주 및 지방정부단위의 감사(Audit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al Units)을 제정한바 있고, 1995년에 SAS No.74 정부실체 및 정부보조금 수혜자의 준거감사(Compliance Auditing Considerations in Audits of Governmental Entities and Recipients of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를 제정한바 있다.

(2)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공인회계사시험에 별도의 과목이나 재무회계과의 일부에 포함시킨다.

(3) 정보 교환 센터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에 AICPA 정부감사질센터(Governmental Audit Quality Center)과 같은 센터를 마련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정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AICPA 정부감사질센터는 질높은 정부감사의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원들이 최고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법인기준 자발적 회원센터로 독특하고 복잡한 분야의 질 높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도전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3.2.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의 마련

3.2.1. 정부회계교육의 현황

현재 우리 나라 공인회계사들은 대학에서 정부회계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CPE과목에 정부회계과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수단위한계를 2006년에 4시간, 2007년에 20시간으로 늘렸고, 감사는 2007년에 10시간을 신설하였다.

미국의 정부감사기준은 경우 1988년이래 매2년마다 정부회계 및 감사기준과 관련된 CPE의 24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3.2.2.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은 감사 및 인증(auditing and attestation), 재무회계 및 보고(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규정(regulation), 기업환경 및 개념(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의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회계에 대한 테스트는 재무회계 및 보고(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부문에서 한데, 여기에는 기업, 비영리조직, 정부실체의 GAAP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술(skills)을 테스트한다. 이 부문은 여섯 분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 분야가 정부실체의 회계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for governmental entities)이다. 배점은 8%~12%이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정부회계 개념

1. 측정초점과 회계의 기준
2. 기금회계 개념과 적용
3. 예산과정

B. 정부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1. 정부통합재무제표
2. 정부형기금 재무제표
3. 기금재무제표의 정부통합재무제표로의 전환
4. 기업형기금 재무제표
5. 수탁형기금 재무제표
6. 재무제표 주식
7. 필수보충정보(경영자 설명 및 분석 포함)
8. 포괄적 연간 재무보고서

C. 혼합된 그리고 분리된 구성단위를 포함한 재무보고실체

D. 거래와 사건들의 전형적 항목들과 특정 유형

1. 순자산
2. 자본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3. 기타 재무원천 및 사용

4. 기금잔액
5. 비교환거래
6. 지출
7. 특별항목
8. 지출원인행위

E.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및 보고

3.2.3. 시사점

미국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가 달라야하는지에 대하여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GASB는 정부가 기업과는 근본적으로(fundamentally)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정부의 회계책임을 평가하고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특징으로 정부회계환경 즉, 조직목적(organizational purpose), 수익의 원천(sources of revenue), 계속성(potential for longevity), 이해관계자의 관계(relationship with stakeholders), 예산의 역할(role of the budget)을 들고 있다. 이 특징들은 외부재무보고를 통해 전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무보고모델(기본재무제표의 내용, 활동보고서, 예산보고), 보고실체 문제, 서비스지향 인프라스트럭처자산, 양여금(grant and gift), 채무상환(debt refunding) 등의 회계 문제가 발생한다.

공인회계사들이 질 높은 정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부회계지식을 CPE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정부회계인의 전문성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정부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측면과 제도 개선 측면으로 구분하여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신정부회계모델은 자발적인 저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주도로 강제한 것이 때문에 정부회계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회계직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감사보수 등에서 정부감사수입의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충실한 CPE제도가

마련되고 감사수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회계에 전문성장화는 현업의 정부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이용자의 관심, 대학에서의 정부회계교육과 연구 등 인프라 등 정부회계환경의 성숙으로 잠재적 정부회계담당자나 공인회계사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심재영(2006), 지방자치단체 회계교육의 성과와 과제, 정부회계연구, 제4권 제1호, 6월, pp. 31-52
- 전중열 · 심재영(2007),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 황국재 · 윤재원 · 김현(2007)(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입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감사포럼
- AICPA(1981), *Audits of State and Local Governemntal Units*,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and Auditing.
- Brown, C. D. and K. Raghunandan(1995), "Audit Quality in Audits of Federal Programs by Non-Federal Auditors", *Accounting Horizons*, September, Vol. 9, No. 3, pp. 72-75.
- _____ (1997), "Audit Quality in Audits of Federal Programs by Non-Federal Auditors: A Reply", *Accounting Horizons*, March, Vol. 11, No. 1, pp. 72-75.
- Deis, D., and G Giroux(1992).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in public sector. *The Accounting Review*, July. pp. 462-479
- Elder, R.J.(1997), Comment on "Audit Quality in Audits of Federal Programs by Non-Federal Auditors", Quality of CPA Audi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unds, *Accounting Horizons*, March , Vol. 11 No. 1, pp. 67-71.
-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2006), *Why Government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Is and Should Be Different*, White Paper.
- Hepp, G. W. and J. F. Mengel(1992),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Audits", *Journal of Accountancy*, June Vol. 173. pp. -87
- O'Keefe, W.T., T. S. Ewtzel, and J.H.Engstrom(1997), An Examianion of the Reations Between Audit Scope and Procedures in Audits of Municipalities, *Accounting Horizons*, December, Vol. 4, No. 4 pp. 68-77.
- President's Council on Integrity & Efficiency(2007), *Report on National Single Audit Sampling Project*.
- Rogow, R. B. and Z. Rezaee(1990), "Governmental Accounting and Auditing: Recent Developments Leading Toward Professional Certification", *Accounting Horizons*, March, Vol. 4, No. 1, pp. 51-63.
- USGAO,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2007 Standards for Audi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grams, Activities, and Functions,